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4일,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 의원)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

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현행법 제3조제2호 등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매매의 유인·권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실제 마약류 등의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유인이나 권유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기나 성매매 등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알선·유인·권유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금지행위에 마약류 등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면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데,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서는 직접적인 광고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폭넓게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문구상 공익적인 목적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인지 알리고 교육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다음으로, 개정안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마약류 투약 등의 범죄는 타인의 유인이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미성년자 투약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마약류 범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다만,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권유”하는 행위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복용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제3조제12호 각 목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그런데, 안 제3조제12호에서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고, 안 제3조제14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3조제12호와 별도로 제14호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제3조제14호의 금지행위는 안 제3조제12호에 포섭될 수 있고, 별도 처벌규정도 없어 개정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